

**민원 ID:**

카운티 생활보조 기록을 확인한 결과, 귀하의 현금 보조금(Cash Aid) 초과 지급 그리고/또는 칼프레쉬(CalFresh)- 이전 명칭은 식품구입권(Food Stamps)입니다 초과 수당 지급으로 인하여, 귀하에게 복지 수당 초과 지급되었고, 현재 체납상태에 있습니다. 다음의 체납 금액은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(Franchise Tax Board) 로 제출되어 세액 환급금 차압 절차가 집행됩니다. 본 고지서는 귀하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체납금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**현금 보조금 \$****칼프레쉬 \$**

상기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,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(Franchise Tax Board)는 예상되는 주 정부 소득세 환급액, 또는 복권 당첨금 (캘리포니아 주정부 법규 제 12419.5항의 주정부 회계 감사원 및 캘리포니아 주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국 정책 및 절차 - 제 20-400항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)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, 체납액 상환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. 본 조치는 복지 수당 체납액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 소득 세무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

**본 조치에 대한 행정 절차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**

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(공동 세금 환급 납세자의 경우)를 대상으로 취하는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귀하는 카운티 담당 사무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이와 같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, 상기 명시된 카운티에 연락해야 합니다. 검토 면담에서, 귀하는 법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 증빙 자료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, 카운티가 체납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로 사용하였던 자료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. 초과 지급의 사유와 산정액 내역을 진술하는 최초 조치 결과 고지서의 사본을 요청하려면, 카운티(상기 명시)에 연락하여 주십시오.

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 (1) 귀하가 현금 보조금(Cash Aid)나 칼프레쉬(CalFresh)를 수령한 사실이 전무하거나; (2) 체납 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; 또는 (3) 귀하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, 신청 시 효력을 발휘하는 파산법에 따라 연체금으로 명시된 금액이 면제되는 경우; 그리고 (4) 카운티가 귀하의 체납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부 법 및 칼프레쉬(CalFresh)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.

카운티가 현재 기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귀하의 주 정부 소득세 환급금이나,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기 전에 카운티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, 귀하의 요청이 본 고지일차로부터 **30** 일 이내에 상기 명시된 카운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 정책 및 절차 - 제 20-407항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, 귀하는 해당 연도 중 언제라도 귀하의 민원 사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상급 법원에 본 조치 집행을 중단하고 명시된 체납금액의 검토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 고지서에 명시된 카운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